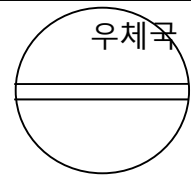


☞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

보내는 사람

세무서장

받는 사람

※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(☎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(납세자용)

가산세 산출근거

연도	회계	신구	발행번호	세입징수관	동	검
주소(납세지)						
성명						
주민등록번호						
소득세 귀속연도						
소득 구분				세율		
과세표준				원		
납기내	납부기한	년 월 일				
개인	지방소득세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				
납기후	년 월 일까지	가산금	원			
		계	원			

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산세 구분	대상금액	세율	세액
①			
②			
③			
④			
⑤			
⑥			
⑦			
⑧			
⑨			
⑩			
⑪			
⑫			
계			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○○ 세무서장 인

수납인

※ 납부장소: 전국우체국·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
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(수납은행용)

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보 관 용)

연도	회계	신구	발행번호	세입징수관	동	검
주소(납세지)						
성명						
주민등록번호						
소득세 귀속연도						
소득 구분						

연도	회계	신구	발행번호	세입징수관	동	검
주소(납세지)						
성명						
주민등록번호						
소득세 귀속연도						
소득 구분						

납기내	납부기한	년 월 일				
개인	지방소득세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				
납기후	년 월 일까지	가산금	원			
		계	원			

납기내	납부기한	년 월 일				
개인	지방소득세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				
납기후	년 월 일까지	가산금	원			
		계	원			

위의 금액을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.
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세무서장

수납인

○○ 수납기관 귀하

○○ 수납기관

수납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안내 말씀

1.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

-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: 「지방세법」 제85조 ~ 제103조의18
- 그 외: 「지방세법」(2014.1.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5조 ~ 제98조

2. 세액 산출근거(과세표준 및 적용세율)

- 관련 법규: 「지방세법」 제91조, 제92조, 제93조, 제94조, 제103조, 제103조의3, 제103조의4, 제103조의6

<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>

세 율 표								
과세표준	귀속년도		과세표준	2017년		과세표준	2014년~2016년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	1,200만원 이하	0.6%		1,200만원 이하	0.6%	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	3.8%	1,940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%	2,540천원	5억원 초과	4%	2,940천원			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					

※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가산세 산출근거

- 관련 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5조, 제56조, 제57조

「지방세법」 제99조, 제103조의8

※ 가산세 구분란은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,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
4. 납부장소: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- 방문납부: 전국우체국·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
- 인터넷 납부: 위택스(www.wetax.go.kr)
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6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·구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(시·군·구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, 심판청구(조세심판원장에게)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서 확인하십시오.